# 대전광역시 대덕구

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기관(부서)의 장 람 **공** 



http://www.daedeok.go.kr

제2025-1호 2025. 1. 3.(금)

# 차 례

### 규 칙(2)
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(규칙 제9%호) ...... 1

### 고 시(1)

### 공 고(1)

공람					
0 1					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# 2025년 1월 3일

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96호

#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 정규칙

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[별지 제1호서식]

## 보 안 점 검 표

구	분	서류보관상태	청 소 상 태	소등상태	화기단속상태	문단속상태	점 검 시 각	및 점검	_1 2
월/일	요일	최 종 퇴청자	최 종 5 시 각	티 청 자 성 명	결 재				

비고 : 1. 서류보관상태 : 책상위에 서류방치여부와 캐비넷, 책상등의 잠금여부

2. 화기단속상태 : 컴퓨터, 프린터, 복사기, 선풍기 및 전열기(커피포트, 전기히터 등)의 전원

스위치의 차단여부와 배선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 여

# <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## □ 개정이유

개선된 무인경비시스템의 방문 기록 등의 기능을 통하여 당직근 무자의 보안점검표 확인이 불필요함에 따라 보안점검표 서식을 변 경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○ 보안점검표 당직근무자 확인란을 삭제하여 서식 변경함(별지 제1 호서식).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## 2025년 1월 3일

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

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97호

###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 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 라 한다)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 의한다.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.
 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

-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・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- 제4조(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
  -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사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,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  -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 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 다.
  -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,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(수당 지급 등)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<제정이유 및 주요내용>

#### □ 제정이유

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신규 개소 등 청소년보호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관계 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로 위기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함(제2조).
-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3조 및 제4조).
-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5조).
-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제6조)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5-1호

#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부여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(건물 번호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### 2025년 1월 3일

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#### O 도로명주소 부여

지 번 주 소	도로명주소	건물번호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 (도로명 고시일)	부여 고시일
신탄진동 856	한절구지로 87 (신탄진동)	건물신축	행정지명[한절구지]를 반영	2025. 1. 3.
신탄진동 857	한절구지로 85 (신탄진동)	건물신축	행정지명[한절구지]를 반영	2025. 1. 3.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(☎ 042-608-5306)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(누리집) (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❖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,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 끝.

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-2호

#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

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391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, 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(도로의 지정·폐지 또는 변경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.

### 2025년 1월 3일

##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

1. 제 목: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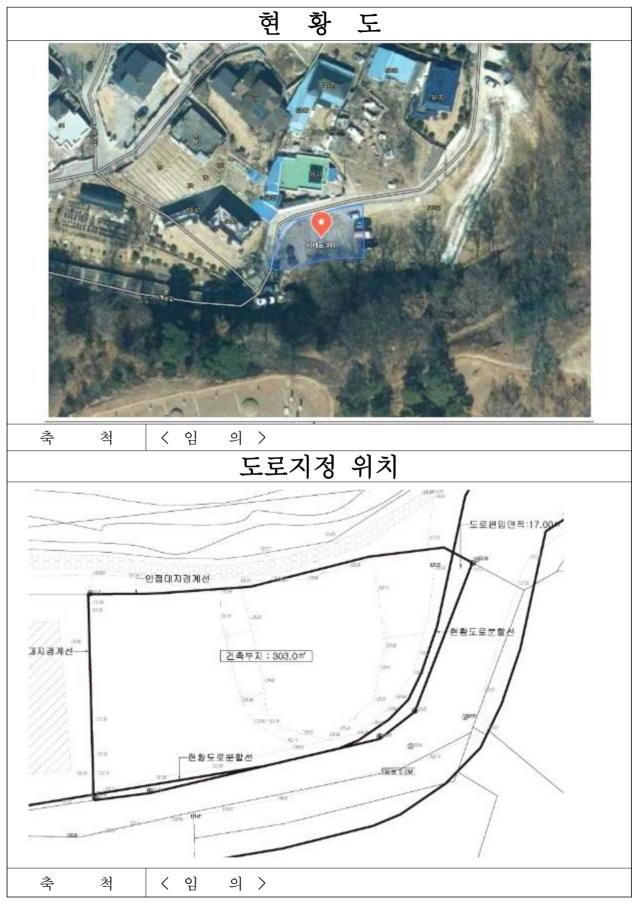
2. 지정근거: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
3. 공고기간: 2025. 1. 3.~ 2025. 1. 18.(15일간)

4. 공고대상

A TU T	지적	편입	-1 D	소 유	자	이 해
소재지	( m² )	면적 (m²)	지목	주 소	성 명	관 계 인 동의여부
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391	320	17	전	주소생략	백 * * 조 * *	동의
	계	17				

- 5. 공고방법: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
- 6.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과로 의견(서면)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(☎042-608-515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끝.